## 참고 1

##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

구 분	2018년	2019년
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	□ 생산직근로자 이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 ○ 비과세 기준  : 월정액급여 190만원  ○ 대상직종  ※ 종전 대상직종  • 공장 • 광산근로자  • 어업 종사 근로자  •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•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	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○ 비과세 기준 : 월정액급여 210만원 ○ 대상 직종 추가 - 돌봄서비스, 미용관련서비스,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
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	□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○ 공무원, 코트라, 코이카,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	
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	□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○ 일반해외근로 : 100만원 ○ 원양어업, 외국항행선박 : 300만원 ○ 해외건설현장 : 300만원 - 감리업무 포함 <추 가>	<ul><li>□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</li><li>○ (좌 동)</li><li>○ (좌 동)</li><li>○ (좌 동)</li><li>- 설계업무 포함</li></ul>
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	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○ 연 300만원 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○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○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<추 가>	
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	<ul><li>□ 자녀세액공제 대상</li><li>○ 기본공제대상자</li></ul>	□ 공제대상 조정 ○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(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)
기부금 세액공제 확대	□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○ 2천만 원 이하 : 15% ○ 2천만 원 초과분 : 30%	□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○ 1천만 원 이하 : 15% ○ 1천만 원 초과분 : 30%

구 분	2018년	2019년
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	□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○ (이월공제기간)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○ (적용시기) 2008.1.1. 이후 지출분부터	<ul><li>□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</li><li>○ 5년 → 10년</li><li>○ (적용시기) 2013.1.1. 이후 지출분부터</li></ul>
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	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○ 진찰・진료・질병예방 비용 ○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〈추 가〉	□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산후조리원 비용 - (대상)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, 시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시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- (한도) 200만원
월세 세액공제 확대	□ 월세세액공제 ○ (대상) - (근로자 등)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,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* * 성실사업자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- (주택)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○ (공제율) 10% - (12% 적용대상자) 총급여액 5.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,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○ (공제한도) 월세액 연 750만원	
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	□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○ 국민건강보험료, 대학등록금, 상품권 구입비, 월세액 등 〈추 가〉	소득공제 적용 제외

 구 분	2018년	2019년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	전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○ (공제대상)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○ (공제율)  - 신용카드 : 15%  - 체크카드현금영수증 : 30%  -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: 40%  - 도사공연사용분 : 30%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)  ○ (공제한도)  ※ 등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 이하 250만원 1.2억 원 초과 200만원  -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·전통시장 사용분 ·대중교통 사용분 ·도서·공연 사용분 ○ (적용기한) '18.12.31	전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○ (좌 동) ○ (공제율) 30% 적용 대상에 박물관· 미술관 입장료 추가 (좌 동) - 도서·공연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: 30%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) ○ (좌 동) ·(좌 동) ·(좌 동) ·(좌 동) ·도서·공연 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○ (적용기한) '19.12.31
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	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○ (대상) 청년, 노인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<추가> ○ (감면율) 70% - 청년의 경우 90% ○ (감면기간) 취업일로부터 3년 - 청년의 경우 5년 ○ (절차)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○ (적용기한) '18.12.31	□ 적용기한 연장 등 ○ 장애인 범위 확대 -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□ (좌 동) □ (절차)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○ (적용기한) '21.12.31

□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	□ 적용기한 연장
	U 70/12 20
○ (감면대상자)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·중견기업 근로자	
○ (감면율) 중소기업근로자 : 50% 중견기업근로자 : 30%	(좌 동)
<ul><li>○ (감면대상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</li><li>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</li><li>○ (저유기하) '18 12 31 까지 가인</li></ul>	○ (적용기한) '21.12.31. 까지 가입
0 (13512) 10.12.01. 5000 518	(10)(L1.12.01. MAI 716
<신 설>	□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○ (대상) 성과공유 중소기업*에 종사하는 근로자 *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 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- 임원,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○ (감면액)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 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%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○ (적용기한) '21.12.31.
<ul><li>□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</li><li>○ (특례내용)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% 선택 가능</li><li>○ (적용기한) '18.12.31.</li></ul>	□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 ○ (적용기한) '21.12.31.
*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	<ul><li>□ 세액공제율 축소</li><li>○ (공제율) 5%</li></ul>
	중견기업근로자: 30%  (감면대상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(적용기한) '18.12.31. 까지 가입  의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(특례내용)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% 선택 가능 (적용기한) '18.12.31.  납세조합* 조합원 세액공제 *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소득세를 납세지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